위탁자산 회계처리세칙

제 정 2006. 9.15

개 정(1) 2014. 1.13

개 정(2) 2021. 2.21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투자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가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(이하 "위탁자산"이라 한다)의 회계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원칙) ①위탁자산의 회계는 공사 고유계정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 야 한다.
 - ②위탁자산은 그 손익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위탁기관별로 구분 계산한다.
- 제3조(준용규정) 위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에 의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계정과목) ①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계정과 포괄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한다.
 - ②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, 계속성,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.
 - ③계정과목의 신설, 변경, 배열은 운용지원담당부서장이 정한다.

제2장 거래의 전산등록 및 장부

- 제5조(거래의 처리) 모든 거래는 전산에 의하여 등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6조(회계장부의 종류 및 양식) 회계장부의 종류와 양식은 위탁자산회계주관부서 장이 정한다.

- **제7조(장부기재원칙)** 장부의 기재는 거래의 내용과 동일하게 전산으로 처리함을 워칙으로 한다.
- **제8조(회계장부의 확인)** ①위탁자산회계담당자는 회계장부를 거래의 내역과 비교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.
 - ②위탁자산회계담당자는 각종 보조부의 잔액과 시산표 잔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, 불일치시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3장 순자산가치 산출

- 제9조(가격 적정성 모니터링) 운용지원담당부서는 유가증권 등 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적절한 사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순자산가치 산출 및 대사) ①운용지원담당부서는 위탁자산별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순자산가치(NAV) 산출을 하여야 한다.
 - ②순자산가치 산출은 전통자산은 일별로, 대체자산은 월별로 한다.
 - ③산출한 순자산가치와 수탁은행에서 제공하는 순자산가치가 위탁자산평가위원 회에서 정한 허용수준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 대사 및 사유 확인 을 하여야 한다.

제4장 결산

- 제11조(결산) 결산은 회계기간의 운용성과와 손익을 확정하고 위탁자산의 자산 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.
- 제12조(결산시기) 매월말 기준으로 위탁자산을 공정가치 원칙에 따라 측정하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결산수행) 위탁자산 결산에 있어서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위탁자산별 공정 가치 평가, 수익과 비용계정과목의 보정처리, 현금 및 증권 보유수량 대사, 순자 산가치 산출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